

『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6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6월 21일

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이 성 칠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역사적 인물과 영남 성리학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·전시하고, 선현들의 충절과 학덕을 교육·체험하는 ‘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’의 전문적·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 마련
- 우리시 명품 역사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관광경쟁력을 높이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목적, 정의, 업무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조 ~ 제3조)
-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4조 ~ 제8조)
- 관리 및 운영, 위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9조 ~ 제16조)
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7조 ~ 제26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,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,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조 장 근

- 본 『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은

- 2019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‘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’의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시간, 입장료 등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과 시설 관리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, 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 기준 등 ‘구미시 역사문화디지털센터’ 운영 전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역사문화디지털센터의 성공적인 개관과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